

## 정 오 표

(2025년 제5판 130 페이지 13번 문제 정답과 해설)

정정 전 : 종전에는 ②지문이 정답이었으나 공탁법 개정(9조의2)으로 ②의 경우도 틀리지 않아 이제는 정답이없게 되었음.

정정 후 : ②지문 중 ...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으나...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틀리므로 여전히 ②지문이 정답.

참고 : 해설 부분 중 개정공탁법 9조의 2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.

**(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설명 추가 - 이곳 138 페이지 형사변제공탁 회수)**

▶ 형사변제공탁 회수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, ② 공탁의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(기소유예는 제외한다)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(공탁법 제9조의2). 이때 공탁물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(공탁규칙 제49조의2).